



교수업적평가 규정

제정일	2010. 9. 1
개정일	2020. 1. 1
개정차수	4차
담당부서	행정지원과

- 제 1조 (규정의 목적)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 교수업적평가제 실시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용어정의) “교수”라 함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말한다. “업적”이라 함은 교수 혹은 학부(과)가 직무상의 목적을 위해 추구한 행위의 결과로 성취된 정도를 말한다. “업적평가”라 함은 교수 혹은 학부(과)가 소정의 직무상 목적의 성취를 위하여 수행한 행위의 목적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일을 말한다. (개정 2012. 7.22)
- 제 3조 (교수업적평가의 목적) 교수업적평가의 목적은 교수 및 교수가 속한 학부(과)와 학교의 발전에 있으며 나아가 교수인사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데 있다.
- 제 4조 (평가 대상) ①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휴직중인 교수는 제외한다. (개정 2012. 7.22)
 ② 외국인전임교원 및 강의전담전임교원, 산학협력중점교원,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특임교수, 임시교원 등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총장이 본 평가 기준의 일부 혹은 전부를 준용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1, 2020. 1. 1)
- 제 5조 (평가영역) ① 교수업적평가는 개인업적평가와 조직업적평가로 구성한다.
 ② 개인업적평가는 교육활동, 연구활동, 산관학협력활동, 봉사활동, 포상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조직업적평가는 교육운영활동, 산관학협력활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이에 대한 세부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5. 8. 1)
- 제 6조 (교수업적평가위원회) 교수업적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교수업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를 위한 규정은 별도로 제정한다.
- 제 7조 (평가실시절차) ① 평가대상 업적은 매년 3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말일까지의 업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
 ② 위원회는 각 평가 자료의 증빙서류를 검증하고 그 사실합치 여부를 확정한다.
 ③ 위원회는 업적평가결과를 확정짓기 전에 각 교수와 학부(과)에 평가결과를 통보하고, 각 교수 및 학부(과)장은 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제 8조의 절차에 따라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평가를 위하여 제출된 증빙서류는 평가과정이 종결된 후 각 교수 및 학부(과)에 반환한다.
 ⑤ 위원장은 직전 학년도 교수업적평가 최종결과를 매년 6월 말일까지 총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3. 3. 1)
- 제 8조 (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및 처리) ① 각 교원 및 학부(과)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심요청 접수 시 지체 없이 이를 재심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본인의 위원회 출석 및 직접적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제 9조 (평가결과의 활용 및 공개범위) ① 평가결과는 교수의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② 평가결과는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에 활용할 수 있다.

③ 평가결과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해당 교수 및 업무 관련자 이외에는 열람할 수 없다.
단, 총장 및 교원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외한다.

제10조 (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